

상표·디자인, 국민이 원하면 즉시 바꾼다!

- 상표·디자인 열린심사 현장 의견 반영, 제도상 불합리 사항 신속 개선 -
- 고시·심사기준 등 행정규칙 즉시 개정으로 국민 체감 개선 속도 높인다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상표·디자인 열린심사’ 간담회(’25. 7월~) 등 현장 소통을 통해 상표·디자인 제도 운영 과정에서 기업·국민이 겪는 불편과 제도상 불합리한 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법 개정 없이도 즉시 해결 가능한 사항은 고시, 심사기준 등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신속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7월부터 산업별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상표·디자인 열린심사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 간담회는 총 9개 산업분야 분과별로 기업 실무자와 심사관이 함께 참여하여 격월로 개최되며, 연말까지 상표·디자인 심사 과정의 불합리한 기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발굴하고, 법령 개정 없이도 고시나 심사기준 등의 행정규칙을 통해 신속히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상표·디자인 열린심사 개요 >

목적	▶ 산업별 전문성 및 트렌드 변화에 따른 업계 의견수렴 체계 구축
운영기간/횟수	▶ '25.7. ~ '25.12. / 총 9개 분과에서 격월 1회(총 30회)
참여자 구성	▶ 각 과별 다출원기업 지식재산(IP) 실무 담당자(5~10명) + 심사관(10명) + 국장
운영방식	▶ 참여기업 '열린 심사위원' 위촉 및 격월 1회 간담회
주요 논의사항	▶ 식별력 판단, 상품유사 여부 등 개별 심사 사안 ▶ 상표·디자인 트렌드, 업계 동향, 제도개선사항, 기타 민원 등

특히 1·2차 간담회를 통해 제출된 개선안 중 일부*는 법 개정 없이도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으로 파악되었으며, 관련 규정 정비가 신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 * ① 이의결정 예정시기 사전 통지절차 신설, ② 상표우선심사 신청시 제출 가능한 입증자료에 사업자등록증 추가, ③ 거래실정에 부합한 심사를 위한 유사상품 심사기준 개정 등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그동안은 현장의 애로사항이 있어도, 법률 개정 중심의 개선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현장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 요구나 불편 사항에 대해 고시나 심사기준 등 행정규칙을 적극 활용해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 개선안 사례, 제도개선 추진 내용

담당 부서	상표디자인심사국	책임자	과 장	엄태민 (042-481-5265)
	상표심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문상 (042-481-5274)

< 사례 ① 이의결정 예정시기 사전 통지절차 신설 >



한 식품기업 A사는 최근 자사 브랜드에 대해 상표를 출원했지만, 출원공고 이후 이의신청이 제기된 이후 언제 심사결과가 나올지 몰라 제품 출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의심사에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으니 마케팅이나 포장 디자인 확정도 못하고 있다”며 이의심사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같이 이의심사 기간이 장기화되고 종료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은 출원인에게 사업 일정 차질과 행정적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모든 이의심사 절차에 대해 ‘이의결정예정시기 통지서’를 일괄 발송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신속히 개정하여 출원인이 심사 종료 시점을 사전에 안내받음으로써 향후 대응은 물론 사업 준비와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례 ② 상표우선심사 신청시 제출 가능한 입증자료에 사업자등록증 추가 >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마친 소상공인 C씨는 자사의 푸드 브랜드에 대해 상표를 출원하며 조속한 등록을 위해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했으나, “실제 상표 사용 사실을 입증하라고 하는데, 아직 사업 초기단계에서 광고물이나 제품 사진이 준비되지 않아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처럼 제품 사진, 카탈로그, 광고물 등으로 한정된 우선심사신청 입증자료 요건은, 소상공인 또는 예비 창업준비자들에게 제도 접근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초기 창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 초기 단계이거나 기업 전략상 상표의 사용 또는 사용 예정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상표우선심사 신청 시 제출 가능한 입증자료 예시에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하고, ‘업태’, ‘종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례 ③ 거래실정에 부합한 심사를 위한 유사상품 심사기준 개정 >



한 건축업체 B사는 당사가 출원한 상표의 지정상품이 타 사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의 분류가 동일하여 유사하다는 의견통지서를 받았으나 실상은 거래실정이 달라 비유사로 보아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상표의 지정상품은 분류에 따라 유사를 판단하는데, 출원과 심사시점의 차이로 현재의 거래실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출원인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상표의 지정상품 분류(유사군코드)가 변경되면 고시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현재의 거래실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의결정 예정시기 사전 통지절차 신설**

- (현황) 사실관계와 쟁점이 명확히 드러난 일부 사례에 한해, 공방이 장기화되는 경우를 대비, ‘이의결정예정시기 통지서’를 발송
 - 통지 대상에서 제외된 출원인은, 심사종결 시점을 사전에 알기 어려워 절차의 예측 가능성 및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 야기
- (추진방향) 모든 이의신청에 대해 ‘이의결정예정시기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의심사 종결 시점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
 - ⇒ 이의신청 절차의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

□ **상표우선심사 신청시 제출 가능한 입증자료에 사업자등록증 추가**

- (현황) 상표우선심사 신청시 제품사진, 카탈로그, 광고물 등 제한된 자료만 상표 사용(예정) 입증자료에 예시
 - 사업자등록증 등 기본적인 사업자료는 예시에서 제외되어 있어 초기 창업자나 소상공인이 자료 준비에 어려운 경우가 있음
- (추진방향) 사업자등록증도 우선심사신청시 상표 사용 또는 예정임을 입증하는 서류 예시에 직접적으로 명시
 - ‘업태’, ‘종목’ 및 ‘사용계획(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 ⇒ 초기 창업자·소상공인의 제도 접근성 제고 및 신속한 권리 보호

□ **유사상품 심사기준 개정**

- (현황) 지정상품 분류(상품류 및 유사군코드)는 연 1회(1.1.) 개정 중으로 적용 시점은 당해 1월 1일 이후 출원건에 대해 적용
 - 이로 인해 출원과 심사시점의 차이가 클 경우 현재의 거래실정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잘못된 유사판단을 할 우려
- (추진방향) 상품분류 고시개정을 연 2~4회로 늘리고 분류(유사군코드) 적용 시점을 심사시점으로 변경
 - ⇒ 정확한 현실의 거래실정을 반영한 합리적 심사체계 구축